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8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7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7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행복나눔과장)
- 발의일자: 2023. 7. 7.(금)
- 회부일자: 2023. 7. 7.(금)
- 검토기간: 2023. 7. 10.(월) ~ 7. 14.(금)

2. 폐지이유

-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에 따라 교복을 입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지원됨에 따라 교복나눔사업 및 관련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4. 검토의견

- 이 폐지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」 제정에 따른 대구시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이 2022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로 확대되고, 2019년 착한교복사업으로 생활복(간소복) 겸용으로 교복나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2009년 시작된 교복나눔운동의 실적은 2012년 3,567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3년 276점으로, 지원내역은 2011년 97명에서 2023년 5명으로 줄어들었음.
- 교복나눔운동 이용자가 줄어들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(구비 192만원) 및 복지행정서비스(아름다운 가게, 복지관, 자원봉사자 등)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.
- 또한 대구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교복지원사업을 202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로 확대하여 1인당 30만원 한도로 동·하복 1벌씩 현물 지원함에 따라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
- 대구시교육청의 교복지원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폐지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·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1.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
2. 다른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·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
3.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